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3. 3. 10.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3. 10.

제 출 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법사랑위원의 단체 명칭 및 관장사무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단체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및 단체 명칭 변경

-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

→ 고성군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 지원 조례

-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

나. 목적 규정에서 단체명과 관련하여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중복되는 부분 삭제(안 제3조)

다. 상위법령에 맞춰 관장사무 정비(안 제4조)상위법령에 맞춰 관장사무 정비(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 규정

나. 예산조치: 2차 추경시 확보 계획

다. 합 의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없음[복지지원과-4963(2023. 2. 3.)]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2-157호

가) 예고기간: 2023. 2. 1. ~ 2023. 2. 21.(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를 “고성군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 통영, 거제 지역의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과 청소년 선도 및 주민의 안녕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와 활동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고성군에서의 활동과 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역협의회의 직무)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른 선도 등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한 선도, 상담, 교육, 지원 등의 업무
2.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및 지역사회 청소년과

주민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조손·다문화가정, 노인, 중증질환자, 장애인, 외국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 범죄에 취약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활동

4.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선도 및 봉사활동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사랑위원”을 “지역협의회”로, “대하여”를 “필요한 비용(이하 “지방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로, “지방보조금을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법사랑위원”을 “지역협의회”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신청 등) 지방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지방보조금의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의 제목“(지원 중단)”을“(지방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보조금 반환)”을“(지방보조금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9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는 이 조례에 따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u> <u>지원 조례</u></p>	<p><u>고성군 법무부 청소년</u> <u>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u> <u>지원 조례</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u> <u>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및</u> <u>주민의 안녕을 위해 조직된 고</u> <u>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의</u> <u>활동과 사업을 「지방재정법」</u> <u>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u> <u>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u> <u>목적으로 한다.</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 통</u> <u>영, 거제 지역의 청소년 범죄예</u> <u>방 활동과 청소년 선도 및 주민</u> <u>의 안녕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u> <u>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u> <u>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방</u> <u>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u> <u>따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u> <u>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성</u> <u>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에 적</u> <u>용한다.</u></p>	<p><u>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무</u> <u>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u> <u>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u> <u>한다)의 고성군에서의 활동과</u> <u>사업에 적용한다.</u></p>
<p><u>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u> <u>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p>1. “<u>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u> <u>합회(이하 “법사랑위원”이라</u> <u>한다)”란 고성군의 보호관찰</u></p>	<p><u><삭 제></u></p>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2. “지방보조금”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법사랑위원의 직무) 법사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접촉선도, 원호선도 등 선도업무
2.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과 원호 및 재정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교육 프로그램 진행,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 및 보호관찰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선도업무 보조
3.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원호 및 재정

제4조(지역협의회회의 직무)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른 선도 등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한 선도, 상담, 교육, 지원 등의 업무
2.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및 지역사회 청소년과 주민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조손·다문화가정, 노인, 중증질환자, 장애인, 외국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 범죄에 취약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지원

4. 지역사회 학생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및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 범죄예방 활동

5. 소년·소녀가장 등 배려대상 청소년, 노인·장애인·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한 지원 활동

6.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과 봉사활동

제5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사랑위원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2. 보호관찰대상 청소년과 선도위원의 체육대회 및 유적지 탐방 활동
3. ~ 5. (생략)
6. 법사랑위원 한마음 행사
7. (생략)

제6조(교부 신청) 법사랑위원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 활동

4.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선도 및 봉사활동

제5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

지역협의회-----

--- 필요한 비용(이하 “지방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 지원-----

1. (현행과 같음)
2. 청소년-----
3. ~ 5. (현행과 같음)
6. 지역협의회 -----
7. (현행과 같음)

제6조(지방보조금의 신청 등) 지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8조(보조금 반환)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 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법사랑위원 소속 회원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방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지방보조금의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방보조금 지원 중단) ----

-- 지방보조금 -----
--.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지방보조금 반환) -----

----- 교부 받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 해야 -----.

<삭 제>

<삭 제>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체명 및 관장사무 변경에 따라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작성을 생략함.

작성자: 행정과장 최 낙 창

□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제12조(위임)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보호관찰위원, 법무보호위원 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 범죄예방위원 자치조직 및 심의기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2. 범죄예방위원의 구체적 위촉 기준이나 해촉 사유 및 임기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위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위원이 수행하는 봉사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사항

□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제3조(직무)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른 선도 등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한 선도, 상담, 교육, 지원 등의 업무
2.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및 지역사회 청소년과 주민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조손·다문화가정, 노인, 중증질환자, 장애인, 외국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 범죄에 취약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활동
4. 기타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범죄예방, 선도 및 봉사활동

제15조(조직 및 명칭)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지역에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의 명칭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로 한다.